

학생군사교육단 운영 규정

제정 2008.11.12.

3차 개정 2021.12.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병역법 제57조 제2항 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대통령령 제20740호)에 의거 상지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부개정 2018.10.04]

제2조(직제편성) 학군단에 대한 직제편성은 대학총장 직속기구로 하고,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으로 편성하며 제3조 각 호에 관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다만, 본교에서는 제3조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군사교육요원을 둘 수 있다.

[전부개정 2018.10.04] [조명변경 2018.10.04]

제3조(학군단 임무) 학군단장은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3. 군가산복무지원금을 받는 대학생, 학사예비후보생의 관리업무
4. 대학교에 소속된 군 위탁생 관리업무
5. 그 밖의 학군사관후보생 관련 업무

[전부개정 2018.10.04] [조명변경 2018.10.04]

제2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장 신설 2018.10.04]

제4조(학생군사교육요원) ① 국방부에서 본교에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기간 동안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한 총장의 지휘와 동시에 군 지휘체통의 지휘를 받는다. 단,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의 인사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의거 군에 있다.

② 본교는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의 학생군사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단, 개인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③ 본교에서 채용하는 학생군사교육요원인 예비역 교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예비역 장교 중에서 임용하며, 채용조건은 총장과 육군참모총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21.12.03.)

④ 학군단에 소속된 예비역 교관은 본교 교직원에 준하여 대우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2.03.)

1. 학군단장이 지정하는 군사학 과목의 교육
2. 학군사관후보생 훈육 지도 및 관리
3. 육군학생군사학교 입영훈련 입소기간 동안의 군사학 교육 관련 업무
4. 본교 및 학군단 관련 업무 및 행사 협조
5. 그 밖에 총장 및 학군단장이 부여하는 업무

⑤ 예비역 교관의 업무실적은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평가를 반영하여 연 1회 학군단장이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또한 학군단장은 예비역 교관의 계약종료 시점 3개월 전에 재임용 의견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한다. (신설 2021.12.03.)

⑥ 학군단장은 예비역 교관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결격사유 발생 시 육군참모총장과의 협의를 거쳐 총장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21.12.03.)

1.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교관 및 훈육요원으로서 교수능력 및 자질이 부족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⑦ 예비역 교관이 사직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종료 시점 3개월 전에 학군단장을 경유하여 총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후임자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용한다. (신설 2021.12.03.)

⑧ 그 밖의 사항은 본교 교직원에 준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1.12.03.)

[전부개정 2018.10.04.] [일부개정 2021.12.03.]

제3장 학생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장 신설 2018.10.04]

제5조(군사교육 담당) ① 학생군사교육은 본교 총장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학생군사교육요원과 본교에서 임용한 군사학 교관이 담당한다.

② 근무시간은 학군단 특성을 고려하여 육군표준일과를 적용하되 학군단장이 대학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04]

제6조(교내교육) ① 교내교육은 본교에서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 ②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6시간, 2일 이상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 학군사관후보생이 군사학 교육을 동시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편성한다.
- ③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일반 선택과목으로 지정하여 이수토록 하고, 학군사관후보생은 군사학 학점 이수로 인한 대학 학점 상한선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 ④ 학군사관후보생이 조기졸업 및 군사학 교육과정 휴학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미이수 군사교육을 이수할 경우 재학 중인 후보생과 동일하게 군사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18.10.04]

제7조(입영훈련) ① 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의해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② 입영훈련의 교과편성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의 통제와 지침을 준수하며, 본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04]

제4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전부개정 2018.10.04]

제8조(홍보업무지원) 본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복무가산금을 지원 받는 대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 관련 제반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04]

제9조(우수인력 획득지원) 본교는 우수한 자원이 학군사관후보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전부개정 2018.10.04] [조명변경 2018.10.04]

제5장 교육시설 및 예산 지원

[장 신설 2018.10.04]

제10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본교는 국방부장관이 요구한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전용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되, 세부 지원 범위는 본교의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1. 교보재 창고
2. 군사교육요원이나 군사학 교관의 사무실, 병 생활관
3. 학군사관후보생 군사학 교육에 필요한 강의실 및 이에 필요한 교육장비와 보조재료

4. 학군사관후보생 병영생활지도실 및 자치위원실
5. 학군사관후보생 체력단련에 필요한 체력단련실 및 샤워실
6. 학군사관후보생 교육에 필요한 운동장(일반학생과 공용으로 순환사용 가능)
7. 그 밖에 군사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차량지원

[본조신설 2018.10.04]

제11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대학은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04]

제12조(군사학 교관에 대한 연구수당 등) 군사학 교관의 교육준비와 지도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04]

제6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3조(구성) ①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군단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본교 처장급으로 구성하고 학군단장을 위원으로 편성하며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훈육관 등을 간사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한다.

[전부개정 2018.10.04] [조명변경 2018.10.04]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심의
2.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대한 학칙 제·개정
3. 대학교에서 학군단에 지원하는 직원인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군단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7장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장 신설 2018.10.04]

제15조(재해보상금 지급)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 2에 의거 이 영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무관 후보생의 신분에 준하여 국가가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군인 연금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0.04]

제16조(보상)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 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과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본조신설 2018.10.04]

제17조(학생군사 교육 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 3 제1항에 의거,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본교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 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 3, 제2항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를 받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04]

제18조(보상절차) ①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본조신설 2018.10.04]

제19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건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본조신설 2018.10.04]

제20조(학생상담) 학군사관후보생의 진로와 학생심리상담은 본인 또는 학군단의 인성 검사 후 필요할 경우 본교에서 전문상담을 지원한다.

[본조신설 2018.10.04.]

제8장 학군단 군사학 교관, 군무원 복장 및 호칭

[장 신설 2021.01.13.]

제21조(입영훈련시 군사학 교관 복장) ① 디지털 무늬 전투복을 착용한다.

- ② 현역과 예비역 구분을 위해 예비군은 흉장을 패용한다.
- ③ 전투복 착용 시 두발은 “간부 표준형” 조발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④ 전투복 착용 시 교관모를 착용한다.

[조 신설 2021.01.13.]

제22조(군무원과 후보생·병사 상호간 호칭) ① 군무원과 학군사관후보생은 상호간에 존칭을 사용해야 한다. 단, 교관 직책을 수행하는 군무원의 경우 명확한 지휘관계가 설정되어 있어 지시어 사용이 가능하다.

② 군무원과 병사는 상호간에 존칭을 사용해야 한다. 단, 명확한 지휘관계시 지시어 사용이 가능하다.

[조 신설 2021.01.13.]

부 칙 (기획예산과-1221, 2008.11.12)

본 규정은 200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511, 2018.10.04)

이 규정은 2018년 10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16, 2021.01.13)

이 규정은 2021년 0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획예산팀-633, 2021.12.03)

이 규정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